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54호, 2021.4.13. 공포, 2021.10.14. 시행)됨에 따라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,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(안 제9조의14 및 제13조의3)

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가담·공모한 수소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,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

나.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(안 별표 1, 별표 3 및 별표 4)

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,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,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21.3)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

다. “과징금의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”로 계산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액 마련(별표 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3조제2항”을 “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류일”을 “유류 또는 수소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”를 “경유, 액화석유가스 또는 수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유류”를 “유류 또는 수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유류구매”를 “유류 또는 수소 구매”로, “유류의”를 “유류 또는 수소의”로, “주유”를 “주유·충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유류비를”을 “유류비 또는 수소구매비용”로, “유류를”을 “유류 또는 수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류”를 “유류 또는 수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유류를 주유받”을 “유류 또는 수소를 주유 또는 충전받”으로 한다.

4. 주유소, 충전소 또는 자가주유·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 또는 수소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

제13조의3제6호 중 “법 제43조제2항”을 “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다목 중 “기간”을 “가중처분 적용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(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, 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에는 5년) 이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2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별표 2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위 표 자목 및 어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.

(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$\times$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화물자동차 대수)

별표 3 제1호나목 중 “기간”을 “가중처분 적용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(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의 경우에는 5년) 이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4 제1호나목 중 “기간”을 “가중처분 적용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(제2호 개별기준의 제15호의 경우에는 5년) 이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제1조(시행일) 별표 1 제1호다목, 별표 2 비고 제1호, 별표 3 제1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9조의14제1항, 제9조의14제3항 및 제13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14(유가보조금 지급 등)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,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·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(이하 “유가보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. 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·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·수탁차주가 구매한 <u>유류</u> 일 것 2. <u>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</u> 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. (생략) 4. <u>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</u>	제9조의14(유가보조금 지급 등) ①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류 또는 수소</u> 일 ----- ----- 2. <u>경유, 액화석유가스 또는 수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주유소, 충전소 또는 자가주유·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 또는 수소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</u>

5.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<u>유류</u> 를 구매할 것 6. <u>유류 구매</u> 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, 자동차등록번호, 구매 일시·장소, 구매량, 구매금액, 구매한 <u>유류</u> 의 종류·단가 등이 실제 <u>주유</u> 한 내용과 일치할 것 7.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·협정에 따라 <u>유류비</u> 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<u>유류</u> 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8. (생략)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,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·수탁차주가 구매한 <u>유류</u> 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유가보조금은 <u>유류</u> 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위·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	5. ----- ----- <u>유류 또는 수소</u> ----- ----- 6. <u>유류 또는 수소 구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류 또는 수소의 주유·충전</u> ----- 7. ----- ----- <u>유류비 또는 수소구매비용을 유류 또는 수소를</u> 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유류 또는 수소</u> ----- ----- ----- ③ ----- <u>유류 또는 수소를 주유 또는 충전받</u>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-

우에는 해당 위·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.	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3(자료의 제공) 법 제6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	제13조의3(자료의 제공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	6. -----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·물류산업과	
연락처	(044) 201 - 3998, 4017